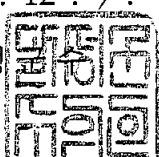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
----------	----

제출일자 : 2006. 12. 1.

제출자 : 달성군청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제 11조, 제 27조 및 제 5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위촉 및 임무 규정과 군, 읍·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 11조 및 제14조, 안 제17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기금의 용도 및 대상자 추천 및 선발 절차 규정(안 제19조 및 제23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청소년기본법
- 나. 입법예고 : 2006. 10. 11. ~ 10. 30(특이사항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제27조 및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 2 장 위 원 회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대구달성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대구광역시달성군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개인의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직 시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②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참고인 출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지도위원

제11조(위촉) ①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대구달성경찰서장, 학교장 또는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지도위원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위촉하되, 당해 읍·면의 인구, 학교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3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여비, 연수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각 읍·면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은 지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③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읍·면 청소년지도협의회장과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호선한다.

제 4 장 기 금

제18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 등이 기탁하는 성금
3.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제1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학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
 2. 직업훈련비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취득을 위하여 중·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생활정착금 : 자립정착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 ②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등 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1조(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22조(기금관리) ①기금은 청소년 육성 기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소년 업무 담당

⑤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①읍·면장은 제19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기금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②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은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기금의 결산)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6개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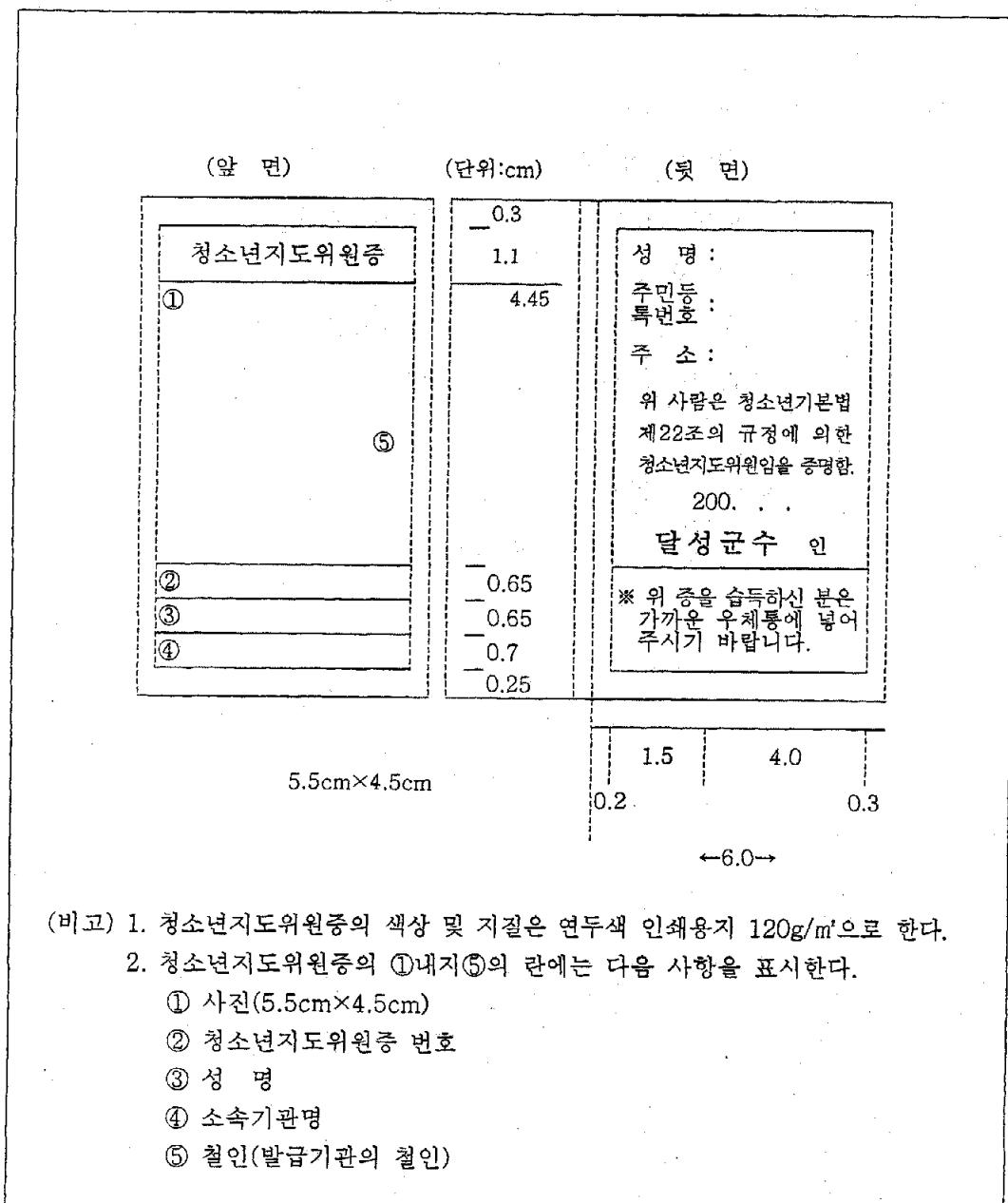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
지도협의회와 읍·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2007. 6. 30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회증의 규격, 제작 및 기재사항(제15조관련)



-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회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회증의 ①내지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5.5cm×4.5cm)
 - ② 청소년지도위원회 번호
 - ③ 성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